

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☐ 허가 ☐ 재심사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
				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7조에 따름	
신청인 (등록의무자)	성명		생년월일		
	소속		직위		
	직급 등		휴대전화번호		
본인과의 관계	성명	고지거부 사유	서명 또는 인	최종 허가일	

본인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2조제4항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」 제17조에 따라 고지거부 ☐ 허가 ☐ 재심사 ☐ 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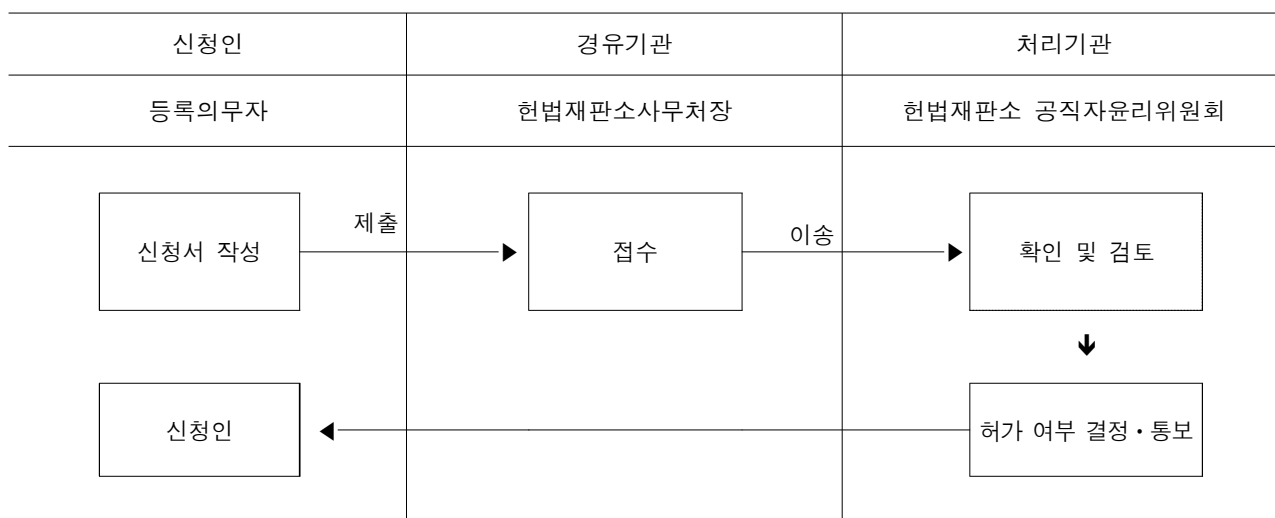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소득금액 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고지거부자는 3년마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고지거부 사유에 대한 서명 또는 인은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.
-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적으십시오.

업무 처리절차

<고지거부 허가 신청>



<고지거부 재심사 신청>

